

과업지시서

[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정수기 렌탈업체 선정 입찰]



2024. 1.

1. 사업안내

가. 사 업 명: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정수기 렌탈업체 선정

나. 사업목적: 교내 보건위생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청결한 음용수를 제공하고자 함

다. 렌탈 정수기 주요내용

- 1) 렌탈대상: 스탠드형 정수기 47대
- 2) 계약기간: 2024. 3. 1.(금)~2027. 2. 28.(일), 3년
- 3) 설치기간: 2024. 2 .28.(수)까지
- 4) 설치장소: 별첨 참고

라. 렌탈 정수기 사양

1) 최소사양

구 분	최소사양
정수방식	역삼투압방식 or 중공사막방식 or 나노테크방식
크기	대형
TYPE	스탠드(저수통 스텐레스)
수량	47대
저수용량	14L 이상(냉수 10L, 온수 4L 이상)
수전구	냉온수 각 1개 이상(온수에는 안전코크 포함)
품질기준	물 마크
정수필터	침전(세디), 전카본, 후카본, 멤브레인등을 모두 사용하여 4단계 이상 정수
표시장치	냉 온수 온도 또는 점등표시
외형크기	360(W)*400(d)*1300(h) 이하
※ 최소 사양 기준으로 설치장소 소요량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출고 3개월 이내 신제품으로 설치해야 함	
※ 코웨이, 청호나이스, LG, SK매직, 금호, 교원에서 생산된 정수기로 한정함	

2) 그 외 사양

- 가) 먹는물 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획득한 제품(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)이어야 한다.
- 나) 냉온정수기 공급방식은 다수가 동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연속 추출이 가능한 저장조 냉온수 공급방식이어야 한다.
- 다) 정수기 저장조는 외부 이물질, 세균감염 등 2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밀폐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라) 정수기는 내부에 저장조가 있는 경우 물 넘침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마)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여야 한다.

마. 임차료(렌탈료)

- 1) 렌탈 등록비, 임대보증금 및 급배수 설치비, 철거 시의 철거용역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.
- 2) 계약업체는 렌탈 정수기의 설치 및 임대에 소요되는 소모품, 유지비, 인건비 등 제반경비 전액을 부담한다.
- 3) 계약업체는 계약 시 제품별 렌탈 단가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동안 렌탈 대수에 렌탈 단가 금액만큼 월 1회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금지불을 청구한다.

바. 유의사항

- 1)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위 렌탈 정수기의 최소사양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, 과업내용 외 기타사항은 학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
- 2) 렌탈 정수기의 제조사 및 모델명이 명시된 상세 내역서(품명, 제조사, 모델명, 규격 등 명시)를 학교에 제출 후 확정된 제품만 납품하여야 한다.
- 3) 대리점일 경우 계약 시 납품제품에 대한 본사의 제조사 품질보증 및 소모품 정품공급 약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- 4) 계약업체는 계약 후 학교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연간 정수기 관리계획(월별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일정)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5) 렌탈 정수기 설치(임차)는 별첨을 참고하여 기한내 설치하되, 최종적인 것은 학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제품에 이상이 발행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6) 기존에 설치된 45대의 정수기와 보관중인 2대의 정수기를 계약업체에서 회수 및 폐기처분한다.(세부사항은 공고상에 첨부된 렌탈정수기 교체 설치위치 참고)
- 7) 계약기간 종료후 2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대학교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소유권 양도 후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 시 대학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- 8)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의 미비, 과오, 부주의,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, 화재 등에 따른 인명피해, 재산피해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천재지변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.
- 9) 본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, 승계, 하도급,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.

2. 일반사항

가. 납품 및 설치

- 1) 렌탈 정수기를 납품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사양과 상이할 경우 학교는 납품을 거절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시 계약업체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.
- 2) 렌탈 정수기 설치위치는 계약업체에서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.
- 3) 렌탈 정수기의 설치작업 중 대학교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4) 일부 설치장소의 급배수 및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**계약업체의 부담**으로 급배수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렌탈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가) 급배수 공사

- 1) 설치장소 인근의 급수 및 배수장소가 없는 경우와 수압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의 차선책을 강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- 2) 급배수 호수의 설치는 미관상태가 양호하도록 시공한다.

나) 전기공사

- 1) 정수기의 전원은 단상 220V, 60Hz로 한다.
 - 2) 전원은 인근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, 다만 인근에 전원이 없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은 규격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3) 전선의 설치는 미관상태가 양호하도록 시공한다.
- 다)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급배수 및 전기 설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원상복구 하지 않을 수 있다.
- 5) 계약 후 납품하고자 하는 정수기의 성능과 디자인이 교내환경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(단가 포함)의 변경 없이 타모델(상위모델)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나. 검수

- 1) 모든 렌탈 정수기는 납품 전 대학교가 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거쳐야 하며, 검수 시 제품에 대한 안내, 설명, 자료제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2) 검수결과 하자발생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대학교가 정하는 기한 내에 재납품, 설치를 하여야 한다.

다. 기타사항

- 1)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체와 학교간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.
- 2) 최종 납품수량은 현장상황 등에 따라 계약업체와 학교간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고, 실 납품수량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며 **대학교의 요청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공급**하여야 한다.

3. 정수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

- 가. 렌탈 정수기의 필터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, 주기적으로 교환이 이루어 지도록 각 필터의 사용수명, 교환주기 등을 정수기에 표시하여야 한다.

- 나. 정수기 저장조는 매달 점검과 더불어 저장조 청소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.

다. 렌탈 정수기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

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연간 정수기 관리계획 제출

구분	청소 및 교체 주기	세부 점검내용
분해청소(살균소독)	2회/년	
저수조 청소	4회/년	
스팀 세척	6회/년	
필터 교체	필터별 교환주기 따름	
정기 점검	12회/년	정기점검(차아염소산수 저수조 살균소독) 매월(내부살균,외부클리닝)
수질 검사	1회/년	국가공인인증 기관에 의뢰 (계약업체 부담/분기별 2대 샘플링)

필터종류	1차필터	2차필터	3차필터	4차필터
교체주기	3개월	7개월	15개월	12개월
필터역할	- 녹물 등 입자가 큰 부유물 제거 - 유해화학물질 제거	가스성분 및 냄새제거	세균, 박테리아, 바이러스 등 제거	오염물질 최종제거

※ 1~2차 통합필터는 교체주기를 3개월로 한다.

- 1) 위 표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은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이상을 시행하여야 함
- 2) 계약업체는 분기별로 대학교에서 지정한 정수기 2대 이상을 샘플링 하여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국가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일반세균 및 대장균에 대한 수질 검사를

시행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정수기는 필터교환, 정수기교체 등을 통해 먹는물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. 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계약자 자체 수질점검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.

- 3) 계약업체는 대학교가 실시하는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.
 - 1차 부적합 시, 즉시 운용 중단하고, 위생관리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1차 검사 연 2회 부적합(4분기 중 2회 부적합 판정받은 경우) 및 재검사(2차)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경우, 그 정수기를 대체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4) 정수기에는 점검직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정기점검표를 부착하고 정기점검 시에는 스팀 청소와 노즐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어 가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장애 발생 통보(유무선 전화 서면 등) 후 24시간 내에 무상으로 정비가 완료되어야 하며, 24시간 이상을 초과할 경우 대체품 등을 통해 정수기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누수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조치되어야 한다.

라. 설치장소 변경

- 1) 대학교에서 냉·온 정수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
- 2) 대학교가 냉·온 정수기의 타 장소 이전설치를 계약업체에게 요청할 경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철거를 요청할 경우 계약업체는 기기 이동설치 및 철거에 별도의 비용 없이 이행하여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